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김재원 · 강경숙
김준형 · 서왕진 · 김선민
이해민 · 차규근 · 황운하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.

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. 그 결과,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2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률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
임명동의안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“금융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”
을 “금융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
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의3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. 다만,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제46조의3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률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 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<u>금융위원회 위원장</u>, <u>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</u>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 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한국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. · 3. (생략) ③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<u>금융위원회 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